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1절 정의

제2.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수입허가란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제2절
내국민 대우

제2.3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의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3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때에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4. 당사국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 절차가 완료된 직후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공한을 통하여 통보한다.

5.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이 부속서 2-가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수입 당시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최혜국 실행 관세율에 대한 개정사항을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일방적인 인하 또는 철폐를 한 후에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2.5조

관세 평가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7조의 규정과 관세평가협정의 제1부 규정 및 부속서 1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제4절

특별 제도

제2.6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로 자국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상품인 경우, 그러한 상품이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조건부로 면제받고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 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제1항에 규정된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규정된 상품의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는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 또는 보증을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입 및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에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재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2.7조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에 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제5절

비관세조치

제2.8조

비관세조치의 적용

1.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나 이 협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세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허용된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초래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그러한 조치도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2.9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쿼터, 수입이나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시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른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가.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격 및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다른 쪽 당사국에 알리거나,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공표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2.10조 비관세조치에 대한 기술적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조치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하 “피요청당사국”이라 한다)에 기술적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 조치 및 그 조치가 기술적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이하 “요청당사국”이라 한다)과 피요청당사국 간의 무역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려사항을 분명하게 적시한다.

2. 그 조치가 다른 장의 적용을 받는 경우, 양 당사국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장별 협의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요청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요청 후 180일 내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언급된 서면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내에 응답하고 기술적 협의를 개시한다. 기술적 협의는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4. 요청당사국은 긴급하거나 부패성 상품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것보다 짧은 기간 내에 기술적 협의를 개최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이 조에 따른 기술적 협의는 제10장(분쟁해결)과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절차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2.11조

수입허가

1. 각 당사국은 모든 자동 및 비자동 수입허가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이하 “수입허가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모든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수입허가협정 제5조제2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이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이 수입허가협정 제4조에 규정된 세계무역기구 수입허가위원회에 수입허가협정 제5조제2항에 명시된 정보와 함께 그 절차를 통보한 경우,
그리고

나.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세계무역기구 수입허가위원회에 제출한 수입허가협정 제7조제3항에 기술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연례질의서에 대한 가장 최근의 답변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연례질의서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1일 전에 그렇게 한다.

4.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그 통보는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5. 어떠한 신청서도 신청서에 포함된 기본 자료를 변경시키지 않는 사소한 서류상의 오류로 거절되지 않는다. 사소한 서류상의 오류는 형식 오류(예를 들어, 여백의 넓이 또는 사용된 글꼴) 및 거짓 의도나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없는 철자 오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6. 각 당사국은 수입허가의 부여 또는 거부 시 자국의 허가당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대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60일 내에 답변한다. 수입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및 무역업자들이 수입허가의 부여 또는 할당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표한다.

7.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수입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신청 거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제2.12조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수입 또는 수출 관

세,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내국 부과금에 상당하는 부과금, 그리고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외의 것을 말한다)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금액이 한정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그러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통관서류가 수입 당사국의 해외 대리인이나 수입 당사국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인이나 기관에 의하여 보증, 인증되거나 달리 열람되거나 승인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13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절한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분야에서 기술협력과 의사소통을 장려한다.

3. 제10장(분쟁해결)은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2.14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양 당사국은 상호 결정된 조건에 대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바와 같이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 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제6절 제도 규정

제2.15조 상품무역위원회

1. 이 장 및 제5장(무역구제)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제12.4조(위원회 및 부속기관)에 따라 설치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과 제5장(무역구제)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 및 점검하고 적절한 경우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작성하는 것

나.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다.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라. 시의적절하게 양 당사국의 관세양허표를 전환하고 전환된 관세양허표 및 연계표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양허표를 최신화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 그리고

마. 합의에 따라 이 장과 제5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논의하는 것

2. 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과 제5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